

수원지방법원 2022. 10. 26 선고 2019가단544044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중소기업진흥공단

소송대리인 A

피 고 주식회사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의

담당변호사 박종배

변 론 종 결 2022. 8. 31.

판 결 선 고 2022. 10. 26.

주 문

1. 피고가 2018. 7. 19. C(주민등록번호 1 생략)와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.
2. 피고는 C(주민등록번호 1 생략)에게 화성시 D 답 595㎡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8. 7. 20. 접수 제14792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피고는 2015. 1.경부터 주식회사 E(이하 ‘E’이라고 한다)에게 원사를 공급하였다. 나. 원고는 2016. 5. 16. E에게 2억 5,000만 원을 대출만료일 2022. 5. 17., 이자율 연 4.7%, 지연배상금률 연 12%로 정하여 대출하였고, 당시 E의 대표이사 C가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.

다. C는 2017. 7. 3. 자신이 소유한 화성시 D 답 595㎡(이하 ‘이 사건 토지’라고 한다)와 F 답 1,560㎡(이하 ‘F 토지’라고 한다), G 도로 22㎡(이하 ‘G 토지’라고 한다)를 공동담보로 하여 H 주식회사(이하 ‘H’이라고 한다)에게 채권최고액 2억 5,200만 원, 채무자 C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.

라. C는 2017. 8. 28. 주식회사 I(이하 ‘I’이라고 한다)에게 이 사건 토지, F 토지, G 토지를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1억 3,200만 원, 채무자 E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.

마. E이 2018. 7.경까지 피고로부터 원사를 공급받고 지급하지 못한 물품대금이 290,204,052원에 이르자, C는 2018. 7. 19.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와 F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4,800만 원, 채무자 E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(이하 ‘이 사건 설정계약’이라 한다), 2018. 7. 20.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(이하 ‘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’라 한다).

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2, 3, 5, 6, 7호증, 을 제1, 2, 4호증(가지번호 포함, 이하 같다)의 각 기재, 이 법원의 I 주식회사, H 주식회사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의 주장

C가 2018. 7. 19.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설정계약은 C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이므로, 이 사건 설정계약은 원고의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에 따라 취소되어야 하고, 원상회복으로 수익자인 피고는 채무자인 C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3. 판단

가. 피보전채권

위 기초사실에 의하면, 원고는 이 사건 설정계약일인 2018. 7. 19. 당시 C에 대하여 E를 주채무자로 하는 2억 5,000만 원의 연대보증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, 위 채권은 이 사건 설정계약의 취소를 위한 피보전채권이 된다.

나. C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

1) 이 사건 토지가 책임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

가) 채무자가 양도한 부동산에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부동산에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는 책임재산은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실제 부담하고 있는 피담보채권액을 뺀 나머지 부분이다(대법원 2018. 4. 24. 선고 2017다287891 판결 참조). 그리고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다면, 물상담보로 제공된 부분은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, 물상담보에 제공된 재산의 가액에서 다른 채권자가 가지는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여야 한다. 이때 수 개의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책임재산을 산정할 때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68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이다(대법원 2017. 6. 19. 선고 2017다210952 판결 참조).

나)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앞서 H, I이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있었고, 위 각 선순위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로는 이 사건 토지와 F 토지 및 G 토지가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.

그리고 이 사건 토지 중 이 법원의 I, H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, 이 법원의 J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에 대한 시가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이 사건 설정계약일인 2018. 7. 19. 당시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원금은 H의 경우 2억 3,500만 원, I의 경우 99,835,301원(수차례 실행된 대출금 중 이 사건 설정계약일인 2018. 7. 19.까지 잔존하고

있던 대출원금 4,835,301원, 20,000,000원, 5,000,000원, 70,000,000원의 합계)인 사실, 이 사건 설정계약일인 2018. 7. 19. 당시 이 사건 토지 가액은 106,505,000원, F 토지 가액은 439,920,000원, G 토지 가액은 3,586,000원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이 사건 토지 중 일반채권자에 대한 책임재산 부분은, 위 H, I의 각 공동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하는 피담보채권액 합계 334,835,301원(= 2억 3,500만 원 + 99,835,301원) 중 이 사건 토지의 부담 부분을 이 사건 토지의 가액에서 공제한 잔액이 된다고 할 것인데, 이 사건 토지의 부담 부분은 위 피담보채권액 합계 중 이 사건 토지가 전체 공동담보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른 64,838,037원[= 334,835,301원 × 106,505,000원/550,011,000원(= 106,505,000 + 439,920,00 + 3,586,000원), 원 미만 버림]이고,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106,505,000원에서 위 부담 부분 64,838,037원을 공제한 나머지 41,666,963원 부분은 일반채권자에 대한 책임재산이므로, 이 사건 설정계약은 책임재산을 처분하는 행위에 해당한다.

2) 사해행위 여부

가)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재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(대법원 2022. 1. 13. 선고 2017다264072, 264089 판결 참조).

나) 앞서 든 증거, 이 법원의 IBK기업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이나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, 이 사건 설정계약 당시 C는 아래와 같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.

(1) 적극재산

이 사건 토지, F 토지, G 토지 : 550,011,000원

(2) 소극재산

ㄱ)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: 250,000,000원

ㄴ)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: 290,204,052원

ㄷ) H에 대한 대출금채무 : 235,000,000원

ㄹ) I에 대한 대출금채무 : 99,835,301원

(마)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: 20,000,000원

(바) 합계 : 895,039,353원

다) 따라서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C가 채권자 중 1인인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는 이 사건 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.

라) 이에 대하여 피고는, E이 2018. 7.경까지 지급하지 않은 원사 물품대금이 290,204,052원에 이르자 E의 대표이사인 C에게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더 이상 원사를 공급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였고, 이에 C는 E이 피고로부터 원사를 공급받아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한 방법으로 2018. 7. 19. 피고와 이 사건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것이므로, 이 사건 설정계약은 E이 피고로부터 원사를 공급받아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여겨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.

그러나 갑 제6, 7호증,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이후 상당 기간 동안 E에 원사를 공급하지는 않았던 사실,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보다 선순위였던 위 H, I에 대한 각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9. 1. 14. 말소되어 피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최선순위가 되자 그 무렵부터 피고가 다시 E에 원사를 공급하기 시작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,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,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위 설정등기를 마친 직후부터 곧바로 원사를 공급받아 E로 하여금 영업활동을 하도록 함이 상당한데도 오히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후 거래가 한 동안 중단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과거 이미 발생한 원사 대금채무만을 담보할 목적이었지 영업계속을 목적으로 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, 피고가 다시 원사를 공급한 시점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최선순위가 된 이후이고, 이에 비추어 보면 영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조치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아니라 그보다 선순위인 H, I에 대한 각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였다고 보일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이 사건 설정계약은 E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채무 변제력을 갖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없다.

3) 사해의사

피고는 이 사건 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는 선의의 수익자였다고 항변한다.

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,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,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(대법원 2006. 7. 4. 선고 2004다61280 판결 참조).

살피건대,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에 대하여 선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다. 소결론

그러므로 원고의 취소권 행사에 따라 이 사건 설정계약 취소하고,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4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윤성진